

[일련번호 : 31]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 복무 관련 규정 위반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7.29.)에 의하여 출장을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장의 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장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93호, 2024.7.29.) VII. 출장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에 따르면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2. 출장공무원의 의무에 의하면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장공무원은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

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019. 8. 26.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이익 조치 강화를 발표,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를 지급받도록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자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 2020. 1. 10. 출장관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출장 시작 시점 및 복귀 시점을 시스템에 지정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출장이행 결과에 기반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시행하였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의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 E은 2024. 9. 25. 09:40~14:00까지 출장신청을 시스템상 저장한 후 09:32에 출장시작 처리하였고 14:26에 시작과 종료시각을 수기입력하였는데, 종료시각을 입력 당시의 시간과 다르게 15:55으로 입력하였다. 출장시간 중인 14:27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다른 날짜의 출장내역보고서 결재를 상신하였고, 15:07에 온나라 결재시스템에서 문서를 기안상신하여 출장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상사의 명에 의하여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출장 전에 출장신청을 보고(결재상신)하여야 하고 출장용무를 마친 후 지체없이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상기인은 출장이 끝난 다음 날인 2024. 9. 26. 09:16에 출장(사전)신청서를 결재상신하였으며, 13:02에 출장내역 결과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출장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출장 종료시간을 부적정하게 지정한 2024. 9. 25. 출장에 대하여 20,000원의 여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추후 동일한 사유로 점검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당 직원 및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 E은 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출장여비 복무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출장 시 출발 및 복귀시간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부정 수령한 출장여비(20,000원) 및 5배의 가산금(100,000원)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